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19나675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조원상, 허범, 손성현

피고, 피항소인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연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6. 23.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단5180020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들과 주식회사 F 사이에 2017. 12. 1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각 127,791,09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들은 각 원고 A에게 15,034,246원, 각 원고 B에게 75,171,232원, 각 원고 C에게

37,585,6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과 주식회사 F 사이에 2017. 12. 1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255,582,1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68,493원, 원고 B에게 150,342,465원, 원고 C에게 75,171,2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나., 다.항과 같은 판결(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를 각각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20행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고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7. 12. 18. 당시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이라 한다)을 제외하면, F가 운영하던 인천 연수구 J 소재 I야구장(이하 ‘I야구장’이라 한다)의 야구장 시설과 이천시 K 외 4필지 소재 L야구장(이하

‘L야구장’이라 한다)의 야구장 시설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는데, I야구장의 야구장 시설 가액은 5,000,000원, L야구장의 야구장 시설 가액은 3,000,000원에 불과하였다.

2) 반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F의 소극재산은 F가 2016. 12. 22. 발행한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의 액수인 1,500,000,000원과 M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 351,673,460원을 합한 1,851,673,460원에 달하였다.

3) F는 이러한 상태에서 F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463,000,000원을 양도함으로써 채무 초과에 빠졌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산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F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일과 인접한 2017. 12. 31.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계 2,680,060,627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채로는 총 2,524,411,411원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F는 463,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50,867,715원 상당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00,000,000원 상당의 단기대여금 채권, I야구장 시설의 가액 1,177,265,090원, L야구장의 시설 가액 515,208,810원 등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극재산 중 이 사건 전환사채 1,500,000,000원의 경우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일 당시 현존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구상금채무 351,673,460원의 경우 당시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F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경우 피고들로부터 전환사채 원리금 상환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투자증권회사 직원인 N이 관여하여 체결한 것이고, F가 피고들의 채권의 변제기한을 유예 받음으로써

채무 변제력을 확보할 의도로 체결한 것이며, 실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추심한 뒤 피고들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돈은 F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에게는 사해의 의사도 없었다.

3. 사해행위의 취소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

1) 원고 A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F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1. 3. 24. 기준으로 30,356,164원(= 판결금 원금 20,000,000원 + 지연손해금 10,356,164원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30,068,493원이 원고 A의 피보전채권액이 된다.

2) 원고 B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F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1. 3. 24. 기준으로 151,821,917원(= 판결금 원금 100,000,000원 + 지연손해금 51,821,917원²⁾)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150,342,465원이 원고 B의 피보전채권액이 된다.

3) 원고 C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은 F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1. 3. 24. 기준으로 75,890,411원(= 판결금 원금 50,000,000원 + 지연손해금 25,890,411원³⁾)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75,171,232원이 원고 C의 피보전채권액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

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2991 판결 등 참조),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있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보전조치로 발생하는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은 그러한 조치를 행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변제기의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특정 채권자가 당시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회수조치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에 관한 차별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라)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F의 재산상황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6, 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강남세무서에 대한 2019. 6. 11.자 과세정보회신 결과,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2019. 6. 21.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F의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 463,000,000원

② I야구장 시설물 가액 : 1,130,286,000원4)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F는 I야구장을 2020. 11. 10.까지 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실제 2020. 10.까지 I야구장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I야구장 시설물의 가액은 F가 I야구장을 사용하는 경우의 실질 가치에 가깝다고 보이는 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③ L야구장 시설물 가액 : 3,000,000원(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인 2018. 3. 31.에 L야구장의 운영을 그만둘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L야구장의 시설물 등을 포함한 야구장 운영권 등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시설물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할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F는 이 사건 야구장의 운영을 그만두고 L야구장의 시설을 방치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L야구장 시설물의 가액은 F가 L야구장 시설물을 따로 처분하는 경우의 실질가치에 가깝다고 보이는 환가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④ 합계 : 1,596,286,000원(= 463,000,000원 + 1,130,286,000원 + 3,000,000원)

⑤ 한편, 피고들이 주장하는 F의 단기대여금 채권 등은 F가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대차대조표의 기재내용을 살펴 볼 때 2017년과 2018년의 단기대여금 액수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의

채권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2. 15.를 기준으로 할 때 F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액은 2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중 대부분이 물수예치금, 급여 등으로 지출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F가 2017. 12. 31.자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50,867,715원 상당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50,867,715원 상당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역시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F의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전환사채 가액 : 1,500,000,000원(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일은 2019. 1. 9.이었고, F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까지 전환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F의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7. 12. 31. 기준으로는

전환사채 1,500,000,000원 중 변제된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 등에게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2018. 12. 31. 기준으로는 290,000,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F가 1,500,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상환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M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 351,673,460원의 경우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일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에 장래 위 구상금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위 법리에 앞서 2)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8호증, 을 제1, 2, 6, 7, 8,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F는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의 채권과 피고들의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수함에 따라 발생한 권리로 변제기, 이율, 기한이익 상실 조건 등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F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P이 2017. 11. 14. 유
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고 이에 따라 F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들 및 피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들에게
사채원리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③ F의 대표이사인 Q과 피고들을 대리한 N은 2017. 12. 15.경 피고들의 전환사채권 상환 유예를
조건으로 F가 차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피고들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7. 9. 22.
F를 상대로 한 전환사채상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F는 2017. 10.경 이미 그 소장 부분을 송달
받은 상태였으므로, F는 위와 같이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할 당시 원고들이 전환사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F가 피고들에게만 우선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전환사채 중 합계 200,000,000원을 양수하였고, 2017. 12. 15. 당시에 Q과
N 사이에 피고들의 전환사채권의 액수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실제
양도된 보증금 채권액은 당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전액에 해당하는 463,000,000원이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들 외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⑤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F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외에 용이하게 집행이 가능한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일부만을 양수하였을 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경

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수한 다른 채권자들의 경우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임이
명백하였다. 한편, 피고들 또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N을 통하여 F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관련하여, Q은 2017. 12. 15. N에게 F의 계좌에 남은 돈이 20,000,000원도 되지 않고, 향후 야구장 운영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예정이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피고들의 전환사채 상황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⑥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F의 적극재산은 1,133,286,000원(= 적극 재산 총액 1,596,286,000원 - 임대차보증금 463,000,000원)이 되었고, 이는 소극재산 1,500,000,000원5) 을 초과하여 F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다. 피고들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무렵 N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F와 전환사채권 원리금 회수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사해해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사해의사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N은 F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P이 2017. 11. 14. 구속 기소되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채권자들에 대한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점(피고들 역시 그 무렵 N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P이 구속된 날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F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전환사채 중 각 100,000,000원의 전환사채를 각각 양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르면 F는 피고 D에게 231,500,000원을, 피고 E에게 231,500,000원을

각각 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불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불가분임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27,791,095원(= 255,582,190원(원고 A 30,068,493원 + 원고 B 150,342,465원 + 원고 C 75,171,232원) ÷ 2)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나) 그리고 수익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11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피고들 등이 H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수익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추심하여 그 중 일부를 F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구하는 바에 따라6),

각 원고 A에게 15,034,246원(= 30,068,493원 ÷ 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 원고 B에게 75,171,232원(= 150,342,465원 ÷ 2), 각 원고 C에게 37,585,616원(= 75,171,232원 ÷ 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현, 판사 허일승, 판사 김수경

별 지 목 록

경기도 이천시 체육용지 9606㎡, 끝.

1) $20,000,000\text{원} \times (3 + 165/365) \times 0.15$ 이나, 이 사건 2021. 3.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작성일인 2021. 3. 18.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2) $100,000,000\text{원} \times (3 + 165/365) \times 0.15$ 이나, 이 사건 2021. 3.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작성일인 2021. 3. 18.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3) $50,000,000\text{원} \times (3 + 165/365) \times 0.15$ 이나, 이 사건 2021. 3.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작성일인 2021. 3. 18.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4) 잔존 가치는 행정업무 측량 설계용역비 부분을 제외한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감정서
32, 41면)

5) 다만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르면, F는 만기일인 2019. 1. 9. 원금의 100%와 연 9.5%
정도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였고, F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P이 2017. 11. 14. 구속
기소되어 F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F의 전환사채
관련 채무는 원금 1,500,000,000원에 미지급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나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

6) 가액배상에 관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역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불가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